[전산양식 A3359-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 매각기일 20○○. ○. ○. 00:00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별지 부동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첨부서류

1.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단, 증명하는 서류가 해당 사건에 제출된 경우 제외)

2. 기타( )

20 . . .

우선매수신고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